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0. 12. 15 선고 2020가단11572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강남

담당변호사 서희석

피고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

담당변호사 김충섭

변론 종결2020. 10. 20.

판결 선고2020. 12. 1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각 1/4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. 5. 20. 접수 74633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원고는 원고와 피고들의 모친인 D 소유였던 별지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2019. 5. 16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고 있다.

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·입증하여야 하며,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령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(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2다25296 판결 참조).

살피건대, 원고에게 피고들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,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 상속이 개시된다면 그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는 확정적인 청구권이 아니고 권리로서의 효력이 약한 일종의 희망 내지 기대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남성우

별지